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6~7월 중 입법예고 예정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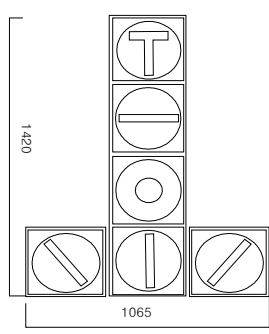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145조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4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1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147조의3 및 영 제87조의5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5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표 3 제1호 노면전차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면전차신호등	세로형 육구등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에 설치한다.
---------	-----------------	---	--

세로형 육구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형 신호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폭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 B형 신호등을 사용한다.
-----------------	--	---

별표 4 황색T자형·백색가로막대형·백색점형·백색세로막대형·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황색T자형·백색가로막대형·백색점형·백색세로막대형·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위로부터 황색T자형·백색가로막대형·백색점형·백색세로막대형의 순서로 배열한다. 필요시 백색사선막대형은 백색세로막대형의 좌우측에 배열하되, 도로 폭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색세로막대형의 좌우측이 아닌 아래에 배열할 수 있다. 백색사선막대형을 아래에 배열할 경우 위로부터 좌측·우측 순으로 배열한다.
--	---

별표 6 II 제3호 나목 일련번호 33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5	좌회전 감응신 호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설치
-----	-------------------	--	--

별표 6 II 제5호 일련번호 5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9	좌회 전 감응 신호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차도에 설치
-----	---------------------------	--	---

별지 제14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9호의2서식] <신 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도로교통법」 제1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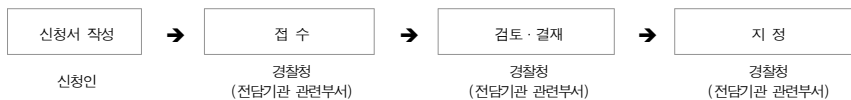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담기관의 조직·인력·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업무추진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0호의4서식] <신 설>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도로교통법」 제1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담기관의 조직·인력·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업무추진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145조 및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4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41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147조의3 및 영 제87조의5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50호의4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